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18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한정애·조 국·이수진

박해철 • 서영교 • 김준형

정성호 • 박지원 • 장철민

송옥주·김영배·김주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「고용보험법」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·강화됨에 따라 출산·유산·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받게 되었음. 또한,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, 파견근로자,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고용관계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출산·유산·사산 시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.

이처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상 지역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일을 하고 있으나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

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 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9조의2(출산수당) ① 공단은 가입자의 출산,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출산수당 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제75조·제76조의2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·제77조의9에 따 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출산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수당의 지급액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 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으로 한다.
 - ③ 그 밖에 출산수당의 구체적 지급대상, 지급기간,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출산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.

제108조의2제1항 중 "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"을 "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"을 "제1항제1호"로 한다.

- 1.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
- 2. 제49조의2에 따른 해당 연도 출산수당 예상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출산수당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자가 출산·유산·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	제49조의2(출산수당) ① 공단은
		가입자의 출산, 유산 또는 사산
		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거
		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
		여 출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
		다. 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제75
		조・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
		후휴가 급여등 또는 같은 법
		제77조의4·제77조의9에 따른
		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
		있는 자에게는 출산수당을 지
		급하지 아니한다.
		② 제1항에 따른 출산수당의
		지급액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
		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
		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
		<u>으로 한다.</u>
		③ 그 밖에 출산수당의 구체적
		지급대상, 지급기간, 지급절차
		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
		경우 출산수당의 지급기간은 3
		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.
제108조의2(보험재정에	대한 정	제108조의2(보험재정에 대한 정

부지원) ① 국가는 매년 예산 의 범위에서 <u>해당 연도 보험료</u>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 단에 지원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(생 략)
- ③ 공단은 <u>제1항</u>에 따라 지원 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사용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④ (생 략)

부지원)	1				
]	다음	각	호에	따른
<u>금액</u>					

- 1.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금액
- 2. 제49조의2에 따른 해당 연도 출산수당 예상 지급액에 상당 하는 금액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<u>제1항제1호</u>-----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